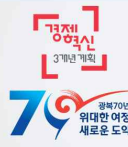



특허청 *혁신의 새시대*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기업성장 전인


 70
 창설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과 장 이인수 사무관 최은림	042-481-835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5년 9월 24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9월 23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디자인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간편해진다

-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그 동안 출원인들이 디자인 출원시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고 국내 주요 판례, 심사관들 간 협의심사사례 등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심사기준은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요건을 간소화하여 서류작성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도면 제출요건 완화

디자인출원시 불필요한 요건들을 폐지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였다. 디자인의 전체적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모든 도면을 낼 필요없이 일부 도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물지 같은 평면적인 물품의 경우 뒷면은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앞면만 제출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대상 확대

좌우 비대칭으로 창작된 ‘파고라’와 같이 좌우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당연한 경우나, 물품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마네킹이나 옷걸이와 같은 보조적인 수단을 함께 표현하는 경우 종전에는 1디자인 1출원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기’ 등이 포함된 디자인의 판단기준 정비

특허청은 심사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요건의 판단기준도 구체화하였다. 그 동안 국기모양이 포함된 디자인은 거절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기모양이 포함되더라도 일률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국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우선권 주장 출원의 디자인 핵심부분 판단기준 정비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서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최초로 출원한 나라의 디자인을 참작하여 디자인의 핵심부분 변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최초 출원과 동일한 범위내에 있는 디자인이라고 판단되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심사기준 개정으로 출원인들의 디자인 출원 편의성이 제고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출원에 어려움을 느끼는 도면요건, 심사 판단기준 등을 찾아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디자인심사기준 주요 개정내용

① 디자인도면의 제출요건 완화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나타나도록 도면을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경우 일부 도면을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생략하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정비
- 평면적인 물품의 앞면만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취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뒷면 부분은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도면 및 부가도면은 통일되게 작성해야 하나,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단면도를 선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디자인 도면에 음영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도면의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 도면 내에 복합단면의 표시 등을 허용함

②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대상 확대

- 둘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고, 디자인이 전체로서 통일성이 인정 되면 특정 물품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가능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물품의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구성물품의 명칭을 나열하여 기재함
- 2 이상의 물품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의 수가 많은 물품류를 기재하고, 심사 일부심사 대상 물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물품으로 함

<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의 예 >

각 구성물품의 표현방법이 동일한 것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형상을 이루는 것	각 구성물품에 관념적으로 관련 있는 인상을 주는 것
		
한 벌의 전기스탠드 및 테이블 세트	한 벌의 샐러드그릇 및 포크 세트	한 벌의 밀폐용기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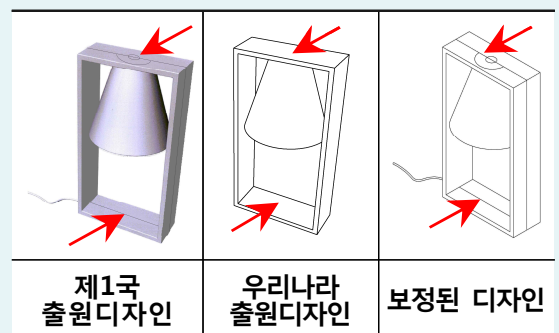
③ ‘국기’, ‘타인의 초상’ 등이 포함된 디자인의 판단기준 정비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국기’ 등이 포함되더라도, 일률적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국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보완
- 타인의 승낙 없이 저명한 타인의 얼굴을 포함하여 출원된 디자인의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으로 판단하도록 함

④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의 요지변경 판단기준 보완

-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서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제1국 출원디자인을 참작하여 요지변경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우선권 증명서류에 표현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하여 우선권 증명서류와 일치시키는 보정을 한 경우,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사관에게 과도한 심사부담을 주지 않는 한, 보정의 요지변경 여부 판단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특허 법원 2014허2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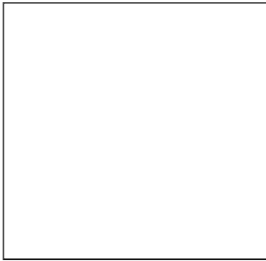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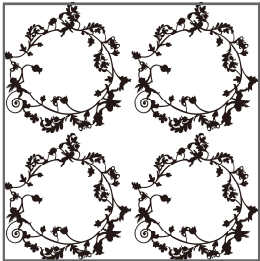


⑤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정비

- 화상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은 표시부 내에서 등록받고자 하는 실선부분을 고려하되, 필요한 경우 파선 부분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화상디자인은 디자인의 개발 및 사용의 특성상 크기의 확대·축소, 위치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위치, 크기는 유사여부 판단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의 위치·크기가 고정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함

【참고 2】 개정안에 따른 도면의 제출예

① 평면적인 물품의 경우

종전		개정	
		⇒ 	
[도면 1.1]	[도면 1.2]	[도면 1.1]	
직물지		직물지	
뒷면 부분의 도면을 반드시 제출하거나, "모양이 없음"이라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해야 함		뒷면 부분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뒷면 부분은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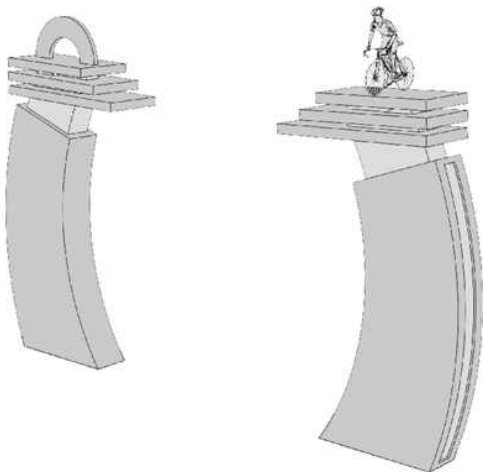
②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경우

종전		개정	
		⇒ 	
[도면 1.1]	[도면 1.1]	[도면 1.1]	
원피스		원피스	
옷걸이를 삭제하여야 등록받을 수 있음		원피스를 완전히 나타내기 위해 옷걸이를 함께 나타낸 것이 명백하므로 그대로 등록 받을 수 있음	

※ 보조적인 물품을 이용하는 출원에

		
목걸이	수영복	양말

③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

 [도면 1.1]	  [도면 A 1.1] [도면 B 1.1]
옥외용 조형물 좌우의 형상이 비대칭이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	청첩장 스크래치 오프(scratch-off)와 같이 물리적인 변형을 가하여 해당 부분의 모양이 바뀌는 것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